

「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5. 10. 30(금) 평창군수(주민생활지원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15. 11. 20(금)

다. 상정일자 : 2015. 12. 7(월) 제215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)

- 법제처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이용섭)

-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의 “사용료”를 “사용료 및 수강료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

1.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
2. 사용 및 수강일 7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
3. 그 밖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

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제3항제2호의 기간 이후부터 사용 및 수강일 1일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.

제9조 본문의 후단을 삭제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있으며, 이로 인하여 수탁관리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”를 “있다”로 한다.

제19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